

##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

민간주도의 “벤처기업 확인제도” 시행(21.2.12)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·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3월 7일  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. 공모대상 사업개요

#### □ 민간주도 ‘벤처기업 확인제도’ 사업목적

- 혁신·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‘벤처기업 확인업무’를 수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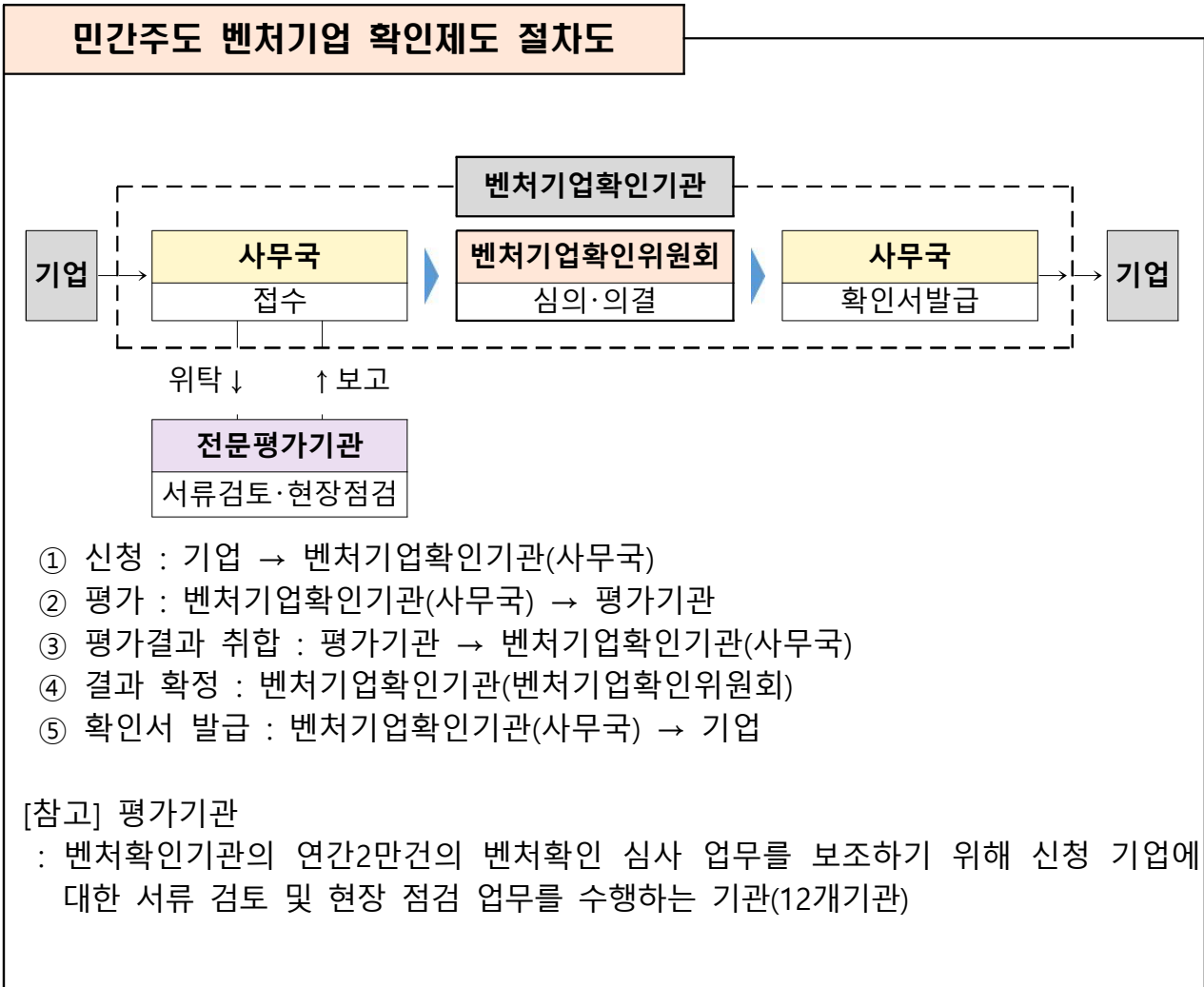
#### 벤처기업 확인제도란?

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‘벤처기업’이라 말하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에서 심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

#### □ 벤처기업확인기관 사업내용

구분	세부 내용
① 행정사무	1)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·접수 2)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* *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·운영 포함 3)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)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) 제도 상담 안내 대응
② 심사지원사무	1)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·운영 지원 2)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

□ 벤처기업 확인절차 <'21.2.12 시행>



□ 지정규모 : 비영리법인 1개 기관\*

\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7 요건 충족 기관에 한함

□ 지원내용

- (행정비용)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
- (심사비용)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·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

\*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경비,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 등

□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기간 : 2023.7.1.~2026.6.30.(3년)

## 2. 신청자격

### 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7의 요건

①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\*일 것

\* 보조금(간접보조금 포함) 관련 횡령 등으로 실정법 위반 법인은 신청 제한

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

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. 단, 합산 경력\*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

\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7의 제3호 참조

## 3. 지정 절차

### □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 일정

내 용	일 정
①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	2023.3.7.
②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 관련 개별 설명 * 기관/단체 사전 요청시 1기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에서 개별 설명진행	2023.3.8.~3.14. (5일간)
③ 사업계획서 접수 * 우편 도착분에 한함	2023.3.8.~3.27. (20일간)
④ 사전 신청자격 검토	2023.3.28.~3.30.
⑤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* 정확한 일시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	2023.4.5. (예정)
⑥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 공고 *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	2023.4.7. (예정)

## 4. 제출서류 및 방법

### □ 제출서류

-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신청서(공문)
- 운영계획서(요약문 포함, 붙임 양식 참조)
- 신청자격 증빙서류(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,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 증빙)
- 기타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- 법인 소개자료(참고용)

### □ 제출기간 및 장소

- (제출기간) 2023.3.8.~2023.3.27. 18시까지
- (제출방법) 우편접수(등기)  
\* 마감일 18시까지 도착·접수분에 한함
- (제출장소) : (우)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(어진동) 세종  
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벤처정책과

### □ 벤처기업 확인제도 설명

- (설명기간) 2023.3.8. ~ 3.14. (5일간)
- (설명신청)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
- (설명방법) 유선 또는 대면 설명
- (문의처)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이용구 팀장 ☎ 02-6009-9620,  
blue1823@venturein.or.kr

## 5.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

### □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구성

- 평가위원은 내·외부 7인 이상 9인 미만으로 구성

### □ 평가방법

- (서류심사)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
- (정량평가) 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, 전문인력 구성 등
- (정성평가)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설명(PPT 발표) 및 질의·응답
  - \* 제출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

### □ 세부 평가기준

-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
  - \* 5개 영역으로 구성, 각 영역별 20점 척도 적용

#### <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>

평가기준	세부평가기준	배점
1. 사업목표의 적절성	■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이해 능력	20
	■ 공익적 목표에의 기여가능성	
2. 운영내용의 적정 여부	■ 제도목표와 운영내용의 일관성	20
	■ 운영내용의 적절성	
	■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	
3. 사업수행능력	■ 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	20
	■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	
4.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	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 능력	20
	■ 평가기관 및 사무국 운영 능력	
5. 벤처기업 관련 업무 인프라	■ 벤처기업 관련 지원업무 경력	20
	■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여 실적	

**최종결과 발표 : 2023.4.7. (예정)**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

**6. 유의사항**

-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·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, 기관지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
-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최종 선정된 대상자와 제안한 과업 이행 내용, 이행 일정 등의 교부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,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- 동 사업에 지정된 법인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,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인기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**7. 기타사항**

**문의처**

-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☎ 044-204-7705

**붙임**

- 운영계획서 등 양식 1부. 끝.